

『大東文化研究』 간행규정

1조(목적) 大東文化研究院은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 『大東文化研究』 간행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조(간행일자) 『대동문화연구』는 매년 4회,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간행한다.

3조(편집위원회)

가. 편집위원회는 『대동문화연구』의 기획 및 논문심사와 게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장은 국내외의 학술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조(논문 투고)

가. 『대동문화연구』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조(논문심사)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각 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라. 심사를 통과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성적순으로 게재한다.

마. 기획 특집에 의해 제출된 논문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6조(기타)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17년 6월부터 발생한다.

『大東文化研究』 투고규정

1조(투고 분야 및 자격)

- 가. 게재할 논문의 내용은 국학 및 동아시아학 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나. 논문투고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 논문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논문에 한해 심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라. 『대동문화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본 연구원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마. 일반 논문의 연속 게재는 불허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획 논문은 예외로 한다.

2조(투고의 일반원칙)

- 가. 논문의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漢字는 노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원고는 한글 파일로 제출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원본이 손상되지 않는 고해상도 자료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조(원고 작성 방식)

가. 원고 구성 및 저자표기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 2) 필자의 이름은 漢字로 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원어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나. 본문 구성

- 1) 국문(영문)초록은 400자 이내로 작성하되,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한다.
- 2) 본문은 章.節.項을 적절하게 나누고 각각 적당한 제목을 붙여 구성한다. 章은 I. II. III. 으로, 節은 1. 2. 3.으로, 項은 1) 2) 3)으로 표시한다.
- 3)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5개 내외)를 첨부한다.
- 4) 영문초록 작성 시 필자의 영문표기는 성, 이름순으로 제시한다.

다. 문장 부호 및 표기

- 1) 본문에서 문장부호의 사용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문장부호 사용원칙에 준한다.
- 2) 로마자 표기법은 맥킨-라이샤우어 표기법(McCune-Reischauer system)을 따른다.
- 3) 용어에 대한 단순한 주석적 설명이나 별도의 용어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한다.
예: 우리나라 유학자(東儒) / 소설(Novel) / 丙子年(1636)
- 4) 외국어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고 현지표기를 적는 경우 괄호를 사용한다.
예: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 / 베르그송(Bergson, Henri) / 원쉬에(文學)
- 5) 생략을 표시하는 말줄임표는 앞뒤로 반각(한 칸)을 띄운다. √.....√
- 6) 생몰년 및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로 표시한다.
- 7) 본문에서 나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점은 반드시 전각기호의 중간점을 사용한다.

라. 인용 및 각주, 참고문헌

- 1) 원전 인용시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문을 제시하고, 각주를 통해 원문을 제시한다.
- 2) 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상단에 원문은 하단에 표시한다.
- 3) 각주
 - ① 著者, 『篇名』, 『書名』, 출판사, 간행년도, 面數, 인용내용의 차례로 제시한다.
 - ② 각주에서 제시하는 한문 원문은 반드시 표점으로 처리한다.
 - ③ 인용하는 글의 面數 표시는 ‘면’으로 한다. 단, 영문서적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필자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줄고’보다는 필자의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을 권장한다.
 - ⑤ 간행연도는 연도만 표기하고, 月은 표시하지 않는다.
 - ⑥ 원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처를 먼저 밝히고, 쉽표를 찍은 후 그 내용은 “ ”안에 제시한다.
 - ⑦ 정기간행물의 경우, 책의 넘버 만을 표기하고 ‘제○호’ ‘○집’ 등은 생략한다. 발행단체 또는 학회 이름을 표기하고, 연구소의 경우 소속을 밝힌다.
 - ⑧ 번역서의 경우, 저자와 역자를 밝힌다.
 - ⑨ 논문 여러 편을 한 번에 참조한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⑩ 앞에서 인용한 논문(책)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 ‘앞의 논문(책)’으로 표기한다.
예: 진재교, 앞의 2016 논문(책), 102~108면

4)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은 아래 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논문의 경우 게재지의 시작과 끝 면을 명기한다.
진재교,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진재교, 「無名の 선비, 기록으로 말하다-無名子尹기의 童蒙詩와 그 世界」,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96~102면
진재교, 「洪良浩 詩文學에 있어서 民族情緒의 受容과 形象化-그의 現實主義的 文學의 性格」,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A. R. Zolberg,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1972, pp.183~207
- ② 참고문헌은 원전, 저서, 논문, 기타자료 순으로 배열하되, 동일 성격의 경우 한국자료, 동양자료, 서양자료 순으로 한다.
- ③ 국내 인용서의 경우는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 중 필요한 것에 한한다.

『大東文化研究』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大東文化研究院(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大東文化研究』(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학술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2조(표절)

- 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성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성과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 성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다.
- 나.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논문이나 저술에서 많은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은 표절이다.
- 다.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논문이나 저술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자기표절이다.

3조(저자표시)

- 가.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나. 저자의 표시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하고, 예우차원으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4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할 수 없다.

5조(인용 및 참고 표시)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7조(책임범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8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9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

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11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심사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1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13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4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규정의 시행

15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검증)

가.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 및 징계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나.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 과정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1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가.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나.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18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19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조(피조사자 보호) 피조사자는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1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내용)

가.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나. 게재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와 연구원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5년간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장 보칙

22조(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3조(효력) 이 규정의 효력은 이 규정을 제정한 2007년 4월 12일부터 발생한다.